

허용물질의 종류 (제3조제1항 관련)

1. 유기식품등에 사용가능한 물질

가.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

1)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

번호	사용가능 물질	사용가능 조건
1	가)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[堆厩肥: 벧짚, 낙엽 등 부산물을 부숙(썩혀서 익히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하여 만든 퇴비와 축사에서 나오는 두엄을 말한다. 이하 같다] 나) 퇴비화 된 가축배설물 다)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 퇴구비	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의 재배방법 중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·액비의 기준에 적합할 것
2	식물 또는 식물 잔류물로 만든 퇴비	충분히 부숙된 것일 것
3	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	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 사용되는 자재는 이 표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
4	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	지렁이 및 곤충의 먹이는 이 표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
5	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	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
6	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	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7	혈분·육분·골분·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	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,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
8	대두박(콩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, 쌀겨 유박(油粕, 식물성 원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, 깻묵 등 식물성 유박류	(1)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(2) 최종제품에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것 (3)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 유박을 사용한 자재는 「비료관리법」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한 리친(Ricin)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

9	제당산업의 부산물[당밀, 비나스(Vinasse,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알코올을 생산한 후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), 식품등급의 설탕, 포도당 포함]	유해 화학물질로 처리되지 않을 것
10	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	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
11	오줌	충분한 발효와 희석을 거쳐 사용할 것
12	사람의 배설물	(1)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 (2) 고온발효: 50° C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 (3) 저온발효: 6개월 이상 발효된 것일 것 (4) 엽채류 등 농산물·임산물 중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
13	벌레 등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	
14	구아노(Guano, 바닷새, 박쥐 등의 배설물)	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15	짚, 왕겨, 쌀겨 및 산야초	비료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16	가) 톱밥,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 나) 나무 숯 및 나뭇재	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·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·처리과정에서 페인트·기름·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일 것
17	가) 황산칼륨, 랑베나이트(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) 또는 광물염 나) 석회소다 염화물 다)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라) 마그네슘 암석 마) 사리염(황산마그네슘) 및 천연 석고(황산칼슘) 바)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사) 점토광물(벤토나이트·펠라이트·제올라이트·일라이트 등)	(1) 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,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(2)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(危害)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(예: 석면광, 수은광 등)은 사용하지 않을 것

	아) 질석(Vermiculite, 풍화한 흑운모) 자) 붕소·철·망간·구리·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	
18	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	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염소함량이 60퍼센트 미만일 것
19	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갈슘	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 단순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, 인을 오산화인(P ₂ O ₅)으로 환산하여 1kg 중 카드뮴이 90mg/kg 이하일 것
20	자연암석분말·분쇄석 또는 그 용액	(1)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(2)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이 포함된 암석은 사용하지 않을 것
21	광물을 제련하고 남은 찌꺼기[광재(鑛滓), 베이직 슬래그]	광물의 제련과정에서 나온 것(예: 비료 제조 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규산질 비료)일 것
22	염화나트륨(소금) 및 해수	(1) 염화나트륨(소금)은 채굴한 암염 및 천일염(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)일 것 (2) 해수는 다음 조건에 따라 사용할 것 (가) 천연에서 유래할 것 (나) 엽면(葉面) 시비용으로 사용할 것 (다) 토양에 염류가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
23	목초액	「산업표준화법」 제11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
24	키토산	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
25	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	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26	이탄(泥炭, Peat), 토탄(土炭, Peat	

	moss), 토탄 추출물	
27	해조류, 해조류 추출물, 해조류 퇴적물	
28	황	
29	주정 찌꺼기(Stillage) 및 그 추출물(암모니아 주정 찌꺼기는 제외한다)	
30	클로렐라(담수녹조) 및 그 추출물	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
2)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

번호	사용가능 물질	사용가능 조건
1	제충국 추출물	제충국(<i>Chrysanthemum cinerariaefolium</i>)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
2	데리스(Derris) 추출물	데리스(<i>Derris spp.</i> , <i>Lonchocarpus spp.</i> 및 <i>Tephrosia spp.</i>)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
3	쿠아시아(Quassia) 추출물	쿠아시아(<i>Quassia amara</i>)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
4	라이아니아(Ryania) 추출물	라이아니아(<i>Ryania speciosa</i>)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
5	넴(Neem) 추출물	넴(<i>Azadirachta indica</i>)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
6	해수 및 천일염	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
7	젤라틴(Gelatine)	크롬(Cr)처리 등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8	난황(卵黃, 계란노른자 포함)	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9	식초 등 천연산	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10	누룩곰팡이속(<i>Aspergillus spp.</i>)의 발효 생산물	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11	목초액	「산업표준화법」 제11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
12	담배잎차(순수니코틴은 제외)	물로 추출한 것일 것
13	키토산	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
14	밀납(Beeswax) 및 프로폴리스(Propolis)	
15	동물·식물성 오일	천연유화제로 제조할 경우에 한하여 수산화칼륨은 동물성·식물성 오일

		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. 이 경우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등록하고 사용해야 한다.
16	해조류·해조류가루·해조류추출액	
17	인지질(Lecithin)	
18	카제인(유단백질)	
19	버섯 추출액	
20	클로렐라(담수녹조) 및 그 추출물	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21	천연식물(약초 등)에서 추출한 제재(담배는 제외)	
22	식물성 퇴비발효 추출액	(1) 제1호가목1)에서 정해진 허용물질 중 식물성 원료를 충분히 부숙시킨 퇴비로 제조할 것 (2) 물로만 추출할 것
23	가) 구리염 나) 보르도액 다) 수산화동 라) 산염화동 마) 부르고뉴액	토양에 구리가 축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
24	생석회(산화칼슘) 및 소석회(수산화칼슘)	토양에 직접 살포하지 않을 것
25	석회보르도액 및 석회유황합제	
26	에틸렌	키위, 바나나와 감의 숙성을 위하여 사용할 것
27	규산염 및 벤토나이트	천연에서 유래하거나, 이를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만 사용할 것
28	규산나트륨	천연규사와 탄산나트륨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일 것
29	규조토	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
30	백반석 등 광물질 가루	(1)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(2)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(예: 석면광 및 수은광 등)은 사용하지 않을 것
31	인산철	달팽이 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
32	파라핀 오일	
33	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	
34	과망간산칼륨	과수의 병해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
35	황	액상화할 경우에 한하여 수산화나트륨

		은 황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. 이 경우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등록하고 사용해야 한다.
36	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	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37	천적	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
38	성 유인물질(페로몬)	(1)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 (2) 덧에만 사용할 것
39	메타알데하이드	별도 용기에 담아서 사용하고, 토양이나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(덧에만 사용할 것)
40	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	과실 창고의 대기 농도 조정용으로만 사용할 것
41	비누(Potassium Soaps)	
42	에틸알콜	발효주정일 것
43	허브식물 및 기피식물	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
44	기계유	(1) 과수농가의 월동 해충 제거용으로만 사용할 것 (2) 수확기 과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
45	웅성불임곤충	

나. 유기축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

1)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

구분	세분	사용가능 물질	사용가능 조건
식물성	곡물류	가) 옥수수·보리·밀·수수·호밀·귀리·조·피·트리트케일·메밀·루핀종실 및 두류 나) 가)항 곡물의 1차 가공품 및 전분(알파과전분을 포함한다)	○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일 것
		곡채류·밀기울·말분·보릿겨·쌀겨·쌀겨탈지·옥수수피·수수겨·조겨·두류피·낙화생피·면실피·귀리겨·아몬드피 및 해바라기피	
	제약 부산물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제약 부산물	○ 유기농산물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일 것
	유지류	옥수수유, 대두유, 면실유, 채종유, 야자유, 해바라기유, 팜유 및 쌀겨기름	
	박류(단백질류)	대두박(전지대두를 포함)·들깨묵·참깨묵·채종박·면실박·낙화생박·고추씨박·아마박·야자박·해바라기씨박·피마자박·옥수수배아박·소맥배아박·두부박·케이폭박,	

		팥유박, 글루텐 및 주정박	
근괴류	고구마, 감자, 돼지감자, 타피오카, 무 및 당근	○ 곡물류와 같음	
식품가공 부산물	두류 가공 부산물, 당밀 및 과실류 가공부산물	○ 곡물 부산물류와 같음	
해조류	해조분	○ 천연에서 유래한 것일 것	
섬유질류	목초, 산야초, 나뭇잎, 곡류 정선 부산물, 입산 가공 부산물, 벧짚, 보리짚, 그 밖의 농산물 고간류, 풋배기 사료작물, 옥수수 속대, 사탕수수박, 사탕무우박, 감귤박 및 발효사료	○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일 것. 다만, 야생의 것은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	
동물성	단백질류	어분·어즙흡착사료, 유·유제품 및 육분·육골분(반추가축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	○ 양식하지 않은 것일 것(어분·어즙흡착사료에 한함)이거나 유기수산물일 것
	무기물류	골분·어골회 및 폐분	○ 순도 99퍼센트 이상인 것일 것
	유지류	우지 및 돈지(반추가축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	○ 순도 99.9퍼센트 이상인 것일 것
광물성	식염류	암염 및 천일염	
	인산염류 및 칼슘염류	인산1칼슘·인산2칼슘·인산3칼슘 및 석회석분말	○ 천연의 것일 것. 다만, 이러한 물질을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화학적으로 충분히 정제된 유사물질 사용 가능
	광물질 첨가물	나트륨·염소·마그네슘·유황·칼륨·망간·철·구리·요오드·아연·코발트·붕소·셀레늄·몰리브덴 및 크롬의 화합물류(유기태화한 것을 포함한다)	
	혼합 광물질	2종 이상의 광물질을 혼합 또는 화합한 것으로서 사료에 첨가하는 형태로 제조한 것만 해당함	

산미제	젖산, 개미산 등 천연 산미제	
항응고제	활성탄	
결착제	천연 결착제	
유화제	천연 유화제	
항산화제	천연 항산화제	
항곰팡이제	천연 항곰팡이제	
향미제	천연 향미제	
착색제	천연 착색제	
추출제	유카추출물·타우마린·목초 추출물·해초 추출물 및 과실 추출물	천연의 것 및 천연에서 유래한 것
완충제	중조·산화마그네슘 및 산화마그네슘혼합물	
올리고당류	갈락토 올리고당, 플라토 올리고당, 이소말토 올리고당, 대두 올리고당, 만노스 올리고당 및 그 밖의 올리고당	
효소제	아밀라제, 알카리성 프로테아제, 키시라나아제, 피타아제, 산성 프로테아제, 리파아제, 셀룰라아제, 중성 프로테아제, 프로테아제, 락타아제 및 그 밖의 효소제와 그 복합체	
생균제	엔테로кокка스페시엄, 바실러스코아글란스, 바실러스 서브틸리스, 비피도박테리움슈도롱검,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, 효모제 및 그밖의 생균제	
규산염제	제올라이트·벤토나이트·카오린 및 일라이트와 그 혼합물	천연의 것일 것. 다만, 이러한 물질을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화학적으로 충분히 정제된 유사물질 사용 가능
아미노산제	아민초산, DL-알라닌, 엽산L-라이신, 황산L-라이신, L-글루타민산나트륨, 2-디아미노-2-하이드록시메치오닌, DL-트립토판, L-트립토판, DL메치오닌 및 L-트레오닌과 그 혼합물	
비타민제 (프로비타민제 포함)	비타민A, 프로비타민A, 비타민B1, 비타민B2, 비타민B6, 비타민B12, 비타민C, 비타민D, 비타민D2, 비타민D3, 비타민E, 비타민K, 판토텐산, 이노시톨, 콜린, 나이아신, 바이오틴, 엽산과 그 유사체 및 혼합물	

- 3) 축사 및 축사주변, 농기계 및 기구의 소독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
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5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동물용의약품 중 별표 3 및 별표 11에 따른 인증기준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물질. 이 경우 가축 또는 사료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.
- 4) 비식용유기가공품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
제1호다목1)에 따른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. 이 경우 허용범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.

2)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보조사료

구분	사용가능 물질	사용가능 조건
----	---------	---------

다. 유기가공식품

1)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

명칭(한)	명칭(영)	국제 분류번호 (INS)	식품첨가물로 사용 시		가공보조제로 사용 시	
			허용 여부	허용범위	허용 여부	허용범위
과산화수소	Hydrogen peroxide		×		○	식품 표면의 세척·소독제
구아검	Guar gum	412	○	제한 없음	×	
구연산	Citric acid	330	○	제한 없음	○	제한 없음
구연산삼나트륨	Trisodium citrate	331 (iii)	○	소시지, 난백의 저온살균, 유제품, 과일음료	×	
구연산칼륨	Potassium citrate	332	○	제한 없음	×	
구연산칼슘	Calcium citrate	333	○	제한 없음	×	
규조토	Diatomaceous earth		×		○	여과보조제
글리세린	Glycerin	422	○	제한 없음 (가수분해도 얻어진 식물 유래의 글리세린만 사용할 수 있음)	×	
퀸라야추출물	Quillaia Extract	999	×		○	설탕 가공
레시틴	Lecithin	322	○	제한 없음 (다만, 표백제 및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얻은 레시틴만 사용할 수 있음)	×	
로커스트콩검	Locust bean gum	410	○	식물성 제품, 유제품, 육제품	×	
무수아황산	Sulfur dioxide	220	○	과일주	×	
밀납	Beeswax	901	×		○	이형제
백도토	Kaolin	559	×		○	청정 (clarification) 또는 여과보조제

벤토나이트	Bentonite	558	×		○	청정 (clarification) 또는 여과보조제
비타민 C	Vitamin C	300	○	제한 없음	×	
DL-사과산	DL-Malic acid	296	○	제한 없음	×	
산소	Oxygen	948	○	제한 없음	○	제한 없음
산탄검	Xanthan gum	415	○	지방제품, 과일 및 채소제품, 케이크, 과자, 쉐러드류	×	
수산화나트륨	Sodium hydroxide	524	○	곡류제품	○	설탕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, 유지 가공
수산화칼륨	Potassium hydroxide	525	×		○	설탕 및 분리대두단백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
수산화칼슘	Calcium hydroxide	526	○	토르티야	○	산도 조절제
아라비아검	Arabic gum	414	○	식물성 제품, 유제품, 지방제품	×	
알긴산	Alginic acid	400	○	제한 없음	×	
알긴산나트륨	Sodium alginate	401	○	제한 없음	×	
알긴산칼륨	Potassium alginate	402	○	제한 없음	×	
염화마그네슘	Magnesium chloride	511	○	두류제품	○	응고제
염화칼륨	Potassium chloride	508	○	과일 및 채소제품, 비유화소스류, 겨자제품	×	
염화칼슘	Calcium chloride	509	○	과일 및 채소제품, 두류제품, 지방제품, 유제품, 육제품	○	응고제
오존수	Ozone water		×		○	식품 표면의 세척·소독제
이산화규소	Silicon dioxide	551	○	허브, 향신료, 양념류 및 조미료	○	겔 또는 콜로이드 용액제
이산화염소 (수)	Chlorine dioxide	926	×		○	식품 표면의 세척·소독제
차아염소산수	Hypochlorous Acid Water		×		○	식품 표면의 세척·소독제
이산화탄소	Carbon dioxide	290	○	제한 없음	○	제한 없음

인산나트륨	Sodium phosphate (Mono-, Di-, Tribasic)	339 (i) (ii) (i) (ii)	○	가공치즈	×	
젖산	Lactic acid	270	○	발효채소제품, 유제품, 식용케이싱	○	유제품의 응고제 및 치즈 가공 중 염수의 산도 조절제
젖산칼슘	Calcium Lactate	327	○	과립음료	×	
제일인산칼슘	Calcium phosphate, monobasic	341 (i)	○	밀가루	×	
제이인산칼슘	Potassium Phosphate, Dibasic	340 (ii)	○	커피화이트너	×	
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	Crude Magnesium Chloride (Sea Water)		○	두류제품	○	응고제
젤라틴	Gelatin		×		○	포도주, 과일 및 채소 가공
젤란검	Gellan Gum	418	○	과립음료	×	
L-주석산	L-Tartaric acid	334	○	포도주	○	포도주 가공
L-주석산나트륨	Disodium L-tartrate	335	○	케이크, 과자	○	제한 없음
L-주석산수소칼륨	Potassium L-bitartrate	336	○	곡물제품, 케이크, 과자	○	제한 없음
주정 (발효주정)	Ethanol (fermented)		×		○	제한 없음
질소	Nitrogen	941	○	제한 없음	○	제한 없음
카나우바왁스	Carnauba wax	903	×		○	이형제
카라기난	Carrageenan	407	○	식물성제품, 유제품	×	
카라야검	Karaya gum	416	○	제한 없음	×	
카제인	Casein		×		○	포도주 가공
탄닌산	Tannic acid	181	×		○	여과보조제
탄산나트륨	Sodium carbonate	500 (i)	○	케이크, 과자	○	설탕 가공 및 유제품의 중화제
탄산수소나트륨	Sodium bicarbonate	500 (ii)	○	케이크, 과자, 액상차류	×	
세스퀴탄산나트륨	Sodium sesquicarbonate	500 (iii)	○	케이크, 과자	×	

탄산마그네슘	Magnesium carbonate	504 (i)	○	제한 없음	×	
탄산암모늄	Ammonium carbonate	503 (i)	○	곡류제품, 케이크, 과자	×	
탄산수소암모늄	Ammonium bicarbonate	503 (ii)	○	곡류제품, 케이크, 과자	×	
탄산칼륨	Potassium carbonate	501 (i)	○	곡류제품, 케이크, 과자	○	포도 건조
탄산칼슘	Calcium carbonate	170 (i)	○	식물성제품, 유제품 (탄산칼슘을 착색료로는 사용하지 말 것)	○	제한 없음
d-토코페롤 (혼합형)	d-Tocopherol concentrate, mixed	306	○	유지류 (d-토코페롤은 산화방지제로만 사용할 것)	×	
트라가칸스검	Tragacanth gum	413	○	제한 없음	×	
퍼라이트	Perlite		×		○	여과보조제
펙틴	Pectin	440	○	식물성제품, 유제품	×	
활성탄	Activated carbon		×		○	여과보조제
황산	Sulfuric acid	513	×		○	설탕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
황산칼슘	Calcium sulphate	516	○	케이크, 과자, 두류제품, 효모제품	○	응고제
천연향료	Natural flavoring substances and preparations		○	제한 없음(다만,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천연향료로서 물, 발효주정, 이산화탄소 및 물리적 방법으로 추출한 천연향료만 사용할 수 있다)	×	
효소제	Preparations of Microorganisms and Enzymes		○	제한 없음(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효소제만 사용할 수 있다)	○	제한 없음(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효소제만 사용할 수 있다)
영양강화제 및	Fortifying		○	「식품위생법」 제7	×	

강화제	nutrients	조제1항 및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의무화된 제품 (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영양강화제 및 강화제만 사용할 수 있다)
-----	-----------	--

조제가 주원료의 투입비율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공시(품질인증) 생산계획서에 기록·관리하고 사용할 것 다. 불활성 성분 목록 3의 식품등급에 해당하는 보조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된 물질일 것

2) 기구·설비의 세척·살균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

제1호다목1)에 따른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중 허용범위가 식품 표면의 세척·소독제인 물질과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및 「위생용품 관리법」 제1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1·2·3종 세척제를 사용할 수 있다.

라. 그 밖에 별표 2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되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물질

2. 무농약농산물등에 사용가능한 물질

가. 무농약농산물: 제1호가목2)에 따른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만 사용할 수 있다.

나. 무항생제축산물: 일반사료를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별표 11 제3호마목 2)의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안 된다.

3. 유기농업자재 제조 시 보조제로 사용가능한 물질

사용가능 물질	사용가능 조건
미국 환경보호국(EPA)에서 정하는 농약제품에 허가된 불활성 성분목록(Inert Ingredients List) 3 또는 4에 해당하는 보조제	가. 제1호가목2)의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단순히 pH 조정 등과 같은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첨가하는 것으로만 사용할 것 나. 유기농업자재를 생산, 제조·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물을 제외한 보